

 루리 위키 >  가이드 · 고민 해결

홈 > 고민 해결

루리의 줍줍 · 응모·실무 가이드

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방법: 신청 대상·주...

루리의 줍줍이 정리한 글



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방법: 신청 대상·주차 가능 조건·과태료 정리

루리

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쓰는 차량에 발급되고, 표지를 붙였더라도 보행 장애인이 실제로 타고 있어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쓸 수 있어요. 신청은 정부24, 방문, 우편으로 안내돼요.

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쓰는 차량에 발급되고, 표지를 붙였더라도 보행 장애인이 실제로 타고 있어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쓸 수 있어요. 신청은 정부24, 방문, 우편으로 안내돼요.

보건복지부 안내와 정부24 민원 안내를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. 서식과 구비서류는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 **공식 확인**하세요. 예시는 설명용 **가상 예시**예요.

1 1.기본 정보

항목	내용
신청 방법	인터넷(정부24), 방문, 우편
방문 접수처	읍·면·동 주민센터(주소지 기준 안내)
처리	즉시(근무시간 내 3시간 표기)
본인확인	정부24 신청 시 인증서 필요
수수료	정부24 페이지의 수수료 항목은 확인하지 못해 공식 확인

2 2.발급 대상 차량 (보건복지부 안내)

-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본인 명의 차량, 또는 배우자·직계 존비속·형제자매 중 같은 주소지에 사는 사람 명의 차량 (대상자 1명당 1대)
- 보행상 장애가 있는 외국인·재외국민 명의 차량 (1대)
- 대상자가 1년 이상 임차한 차량 (1대)
- 장애인복지시설·단체, 노인복지시설이 업무에 쓰는 차량
- 장애 학생 통학 차량, 장애 아동 어린이집 차량, 특별교통수단 등

3 3.신청 순서

- 대상자와 차량이 위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요.
- 정부24 「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(재발급) 신청」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요.
- 서류를 준비해요. 자동차등록원부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한다고 안내돼요.
- 재외국민·외국인은 장애 사실을 증명하는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안내돼요.
- 차량을 시설대여·임차한 경우 계약서 사본이 필요해요.
- 훼손·기재사항 변경으로 재발급받을 때는 기존 표지를 내요.
- 받은 표지는 차량에 눈에 띄게 두어요.

4 4.주차 가능 조건

- 표지를 보이게 두고,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차에 타고 있어야 해요.

- 보건복지부 페이지는 이 조건에서만 표지가 유효하다고 설명해요.
- 차량을 바꾸면 차량번호가 달라지므로 다시 발급받아야 해요. 세부 절차는 관할 기관에 **공식 확인**하세요.

5. 과태료 (보건복지부 안내 기준)

위반	금액
표지 없이 또는 보행 장애인 미탑승 상태로 주차	10만 원 (법률상 상한 20만 원)
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로를 막는 등 주차 방해	50만 원 (법률상 상한 100만 원)
표지 양도·대여·위조·부당 사용	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(시행령 별표 기준 6개월, 1년, 2년 단계). 금액은 공식 확인

6. 자주 하는 실수

- 장애인 본인이 없는데 표지만 보고 주차하는 경우
- 표지를 가족·지인에게 빌려주는 경우
- 이사나 차량 교체 뒤 기재사항 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
- 구역 앞뒤 공간을 막고 잠깐 세우는 경우(주차 방해에 해당할 수 있어요)

7. 가상 예시

G씨(가상)가 보행이 어려운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가는 경우, 아버지가 탑승한 상태에서 표지를 보이게 두면 전용구역에 주차할 수 있어요. 아버지를 내려 드린 뒤 G씨가 혼자 다른 일로 같은 차를 세우면 조건에 맞지 않아요.

8. 체크리스트

- 대상자와 차량이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
- 정부24 인증서 또는 방문 준비물을 챙겼다
- 임차 차량이면 계약서 사본을 준비했다
- 표지를 차량에 잘 보이게 두기로 했다
- 탑승 없이 표지를 쓰지 않기로 했다

9 용어 정리

- **보행상 장애:** 걷기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를 뜻해요. 구체적 판정 기준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.
- **장애인전용주차구역:** 편의증진법에 따라 지정된 주차 공간이에요.
- **주차 방해:** 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진입로를 막는 행위예요.
- **재발급:** 분실·훼손·기재사항 변경 때 다시 받는 절차예요.

10 자주 묻는 질문

Q. 표지가 있으면 언제나 주차할 수 있나요?

A. 아니예요. 보행 장애인이 탑승해야 해요.

Q. 정부24 외에 어디서 하나요?

A. 주민센터 방문이나 우편도 안내돼요.

11 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

- 보건복지부 장애인편의시설 정책: <https://www.mohw.go.kr/menu.es?mid=a10710020500> (<https://www.mohw.go.kr/menu.es?mid=a10710020500>)
- 정부24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(재발급):
<https://www.gov.kr/mw/AA020InfoCappView.do?CappBizCD=14600000270> (<https://www.gov.kr/mw/AA020InfoCappView.do?CappBizCD=14600000270>)
-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,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:
<https://www.law.go.kr> (<https://www.law.go.kr>)
- 정확한 수수료와 표지 부정사용 과태료 금액: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함



공유

공유하기

카카오톡



링크 복사

네이버 블로그

밴드



Facebook

💬 다른 고민 보기 · 🌟 루리에게 추천 상담 받기

12 마감 임박 공모전

출처: 루리의 줍줍(sungprofile.cloud) · 최신 내용은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